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
----------	-----

발의년월일 : 1994. 11. .

발 의 자 : 오진택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과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음. (안 제2조)
- 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토록 하였음. (안 제3조)

- 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였음. (안 제5조)
- 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실비보상을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 보상토록 하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안 제9조)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신설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하는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제1항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다음에 “및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삽입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증인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u>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u>	제2조(감사) ① <u>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u>	제2조(감사) ① <u>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u> <u>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	제2조(감사) ① <u>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u> <u>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	제2조(감사) ① <u>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u> <u>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	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	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	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	② <u>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생략)	제3조(조사) ① (생략)	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③ <u>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	③ <u>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u>	③ <u>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u>	③ <u>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u>	③ <u>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u>
④ - ⑦ (생략)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생략)	4. (신설)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하는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1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		

현행	개정안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증인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